

광주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3가단56182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안수

변론 종결 2024. 10. 30.

판결 선고 2024. 11. 27.

주 문

-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9,59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당사자들의 지위

1) C는 안산시 상록구 D에서 금형, 사출 및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(이하 '소외회사'라고 한다)의 대표이사이면서, 위 법인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의 종류를 '업태: 제조업, 제조', '종목: 금형, 실드케이스'로 하여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.

2) 피고는 C의 아들이다.

3) 피고는 2019. 3. 8. 사업종목을 '금형 사출 및 조립업, 무역업' 등으로 하여 'F'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(이하 '이 사건 사업자등록'이라고 한다)을 하였고, 2019. 9. 18. 사업장 소재지를 소외회사의 위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로 하는 내용으로 정정신고를 하였다.

나.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 및 C의 연대보증

1) 소외회사는 2017년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건의 대출을 받았고, C는 소외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,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각 대출채권을 순차로 양도받았다.

2) 원고는 소외회사와 C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도받은 채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. 11. 24. 'C는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,246,0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고 한다)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(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6998).

다. 피고의 G로부터의 대금 수령

1) G는 2019년 초경 C에게 금형 및 부품 가공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제작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이에 따라 C가 그 금형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.

2) 이후 G는 C의 요청으로 2019. 5. 9.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제작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각 금형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, 피고로부터 합계 29,590,000원 [= 2019. 5. 17.자 5,900,000원 + 2019. 5. 23.자 1,000,000원 + 2019. 6. 10. 2,000,000원 + 2019. 7. 10.자 10,000,000원 + 2019. 7. 30. 8,000,000원]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, 피고에게 위 제작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9호증, 을 제2 내지 5, 7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는 2024. 10. 2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 C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금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그 증여액 상당의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.

나.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,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, 그와 같은 사해행위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(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5다48599,48605 판결,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).

다.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각 금전의 증여일은 2019. 5. 17.부터 2019. 7. 30.까지인데 그 각 증여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24. 10. 28.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, 이는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.

판사김혜선

별지